

o Cogeneration electricity production at its best

나. NOVEM(네델란드 에너지 환경청)

- o Netherlands Agency for Energy and Environment
- o Building on Energy Policy(1994-1998 Built Environment Program)
- o Renewable energy in the Netherlands

3. 프랑스

가. EDF(프랑스 전력공사)

- o Technical Operation Results 1996
- o Organization and keys figures
- o Electricite de France General Presentation
- o Cogeneration Development
- o Cogetherm General overview
- o Blue, Yellow, Green, Electricity Tariff

**참고자료 1. 규제완화 및 관련법규 개정내용**

1. 열병합발전에서 사용되는 연료의 황함유량 규제 완화

o 개요

우리 협회에서 1996년 12월부터 추진해온 열병합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연료의 황함유량 기준의 완화가 관련기관으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아 1997년 12월 31일부로 공포되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어 황함유량 0.3%이상의 연료를 사용할 경우 지불하던 기본부과금을 황함유량 0.5%미만의 액체연료와 0.45%미만의 고체연료를 사용시 면제받게 되어 기존열병합발전업체에는 연료비용이 경감되고 신규도입업체에 대해서는 투자경제성이 다소 보완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o 관련 근거 : 대통령 제 15,583호(대기환경보존법 시행령중 개정령)  
1997년 12월 31일 관보에 게재

o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부과금의 부과면제)	제26조(부과금의 부과면제)
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을 부	좌 동

현 행	개 정 (안)
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연료와 제1호 또는 제2호의 연료를 혼소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은 제1호에 또는 제2호의 연료사용량에 해당하는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은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황함유량 0.3퍼센트 이하인 액체 및 고체연료, 발전 시설의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황함유량 0.5퍼센트 이하인 액체 연료 또는 황함유량 0.45퍼센트 미만인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2 ~ 3 <생략>	1.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황함유량 0.3퍼센트 이하인 액체 및 고체연료, 발전 시설의 배출 시설 (설비용량 100MW미만의 발전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황함유량 0.5퍼센트 이하인 액체 연료 또는 황함유량 0.45퍼센트 미만인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o 기타

관련업체는 이 내용을 숙지하여 기존내 연료를 사용하면서도 기본부과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배출부과금은 이와는 별도임을 알려드립니다.

## 2. 열사용기자재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

전문개정 1996. 5. 14. 통상산업부 고시 제96-58호  
개 정 1997. 12. 26. 통상산업부 고시 제97-215호

### 제1장 총칙

####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6항 및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기기의 제조검사, 설치검사, 계속사용검사, 설치장소변경검사 및 개조검사를 면제 및 취소하는 절차등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2. 용어의 뜻

### 제2장 용접검사 면제공장의 인정 및 취소

### 제3장 계속사용검사의 면제

#### 1. 검사면제의 신청

##### 1.1 (생략)

##### 1.2 (생략)

##### (1)-(3) (생략)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2에 규정된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무재해 사실 확인원

#### 2. 검사면제의 심사 및 통보

#### 3. 검사면제의 취소

### 제4장 보험가입자의 검사면제

#### 1. 검사면제자의 검사결과 제출

##### 1.1 검사대상기기 제조업자

(가) 제조검사 또는 설치검사를 면제받는 제조업자는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항의 해당서류를 매반기별로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다. 다만,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서식은 공단 검사지침에 별도로 정한다.

(1) 제조검사 반기별 실적(별지 제2호 서식)

① 용접 및 구조검사 결과서

(2) 설치검사 반기별 실적(별지 제3호 서식)

② 설치검사 결과서

(3) 보일러 및 압력용기 관리대장

(나) 설치검사를 면제받는 제조업자는 검사대상기기 설치시 설치지역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면제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1.2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사용자)

계속사용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및 개조검사를 면제받는 설치자(사용자)는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따라 해당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검사기기에 다음 각항중 해당서류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속사용검사 결과서(운전성능 측정결과서 포함)

(2) 설치장소변경검사 결과서

(3) 개조검사 결과서

#### 1.3 확인 및 조치

공단 이사장은 제1.1 및 1.2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검사결과서를 확인하고 검사결과가 검사기준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면제된 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 1.4 검사면제자의 보험가입사실등 통보

##### 1.4.1 검사대상기기 제조업자

(1) 보험가입증명서

(2) 검사시설 보유현황(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별표 10의 3)

(별지 제1호 서식)

##### 1.4.2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사용자)

(1) 보험가입증명서

(2) 보험가입일 현재 최근 3년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규정된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무재해 사실 확인원

##### 1.4.3 확인 및 조치

공단 이사장은 1.4.1 및 1.4.2의 규정에 의한 통보서류를 확인하고 다음 각 항의 1에 해

당되어 검사의 면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면제된 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1.4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1.4.1 및 1.4.2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서류가 검사면제의 요건에 위배될 경우

## 2. 관련서류의 보존

제1.4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관련서류를 검사 면제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3. 보험계약의 해지, 면제검사의 재실시에 따른 조치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제35조 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또는 면제한 검사를 다시 실시하는 경우 공단 이사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제조업자나 설치자(사용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4. 검사대상기기의 사후관리

검사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의 자체검사, 설치자 변경신고, 폐기 및 사용중지신고, 검사개상기기 조종자 선임신고등은 검사면제와 관계없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 3. 열병합발전관련 신문기사 보도내용 소개

〈1998년 1월 8일자 한국경제신문 보도내용〉

### “민간기업 전력판매 허용”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사업이 올해 안에 부분적으로 자유화돼 민간기업들도 전력을 일반에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특히, 민간기업들이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들어서는 대형건물에 독자적인 발전시설을 갖추고 인근지역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등 기존의 전력공급사업에 일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7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전기사업법을 개정, 산업용 자가발전업체의 전력판매제도와 민간기업의 전력판매사업을 허용하는 「특정 전기사업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또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LNG(액화천연가스) 수입권도 풀어 포항제철, 한전등 대량수요업체가 직수입 할 수 있게 허용키로 했다. 통산부는 전기판매제도와 관련 일본이 지난 95년부터 시행중인 「특정 전기사업제도」를 도입, 민간기업등이 재건축, 재개발 신설공단지역등지에 들어서는 대형건물에 발전시설을 건설해 전력을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전은 아무런 사전대책없이 민간기업에 전력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력판매와 가스도입을 경쟁화하는 동시에 한전을 △발전 △송배전 △판매등 3개부문으로 분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김호영 기자〉

※ 국내 열병합발전 용량별 현황(1996년말 현재·건물제외)

구분	용량별	10,000kw미만	10,000~30,000	30,000~50,000	50,000~100,000	100,000이상	합계	
자가발전	업체	업체수	27	20	6	4	3	60
		구성비(%)	45	33.3	10	6.7	5	100
	총용량	용량(KW)	140,535	365,724	223,880	264,835	1,526,609	2,521,583
		구성비(%)	9.42	24.53	15.01	17.76	33.28	100
공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지역난방)	업체	업체수	-	4	2(1)	6(1)	1	13(2)
		구성비(%)	-	30.8	15.4(50)	46.1(50)	7.7	100(100)
	총용량	용량(KW)	-	84,000	93,500 (43,500)	414,300 (57,000)	115,410	707,210 (100,500)
		구성비(%)	-	11.9	13.2 (43.3)	58.6 (56.7)	16.3	100 100

( )내는 지역난방이며 합계란의 ( )내는 지역난방을 합하였을때 수치임.

## 참고자료 2. 국내 열병합발전설비 제작사별 현황(터빈)

제작사별	대수	용량	사용업체현황
미쓰이	13	266,200	(주)미원, 현대석유화학(2), 삼양사 전주공장, 포항종합제철(광양제철소)(4), 쌍용정유, 삼성정밀화학(주)(2), 에너지관리공단 집단에너지사업본부, 동양화학공업(주) 인천공장
에너콤(미)	1	2,500	(주)미원
가와사키	19	268,550	(주)세원, 현대정유(주) 부산공장, (주)LG화학 부평공장, 중앙개발, 현대정유(주)(5), 세풍제지, 포항종합제철(포항제철소)(2), (주)영풍석포제련소, 삼성석유화학(주)(2), LG금속(온산), (주)한주, 벽산에너지(이리공단), 현대전자산업(이천공업지역)
SIMENS	14	264,250	제일제당(주), 연합철강공업(주)(2), (주)삼양제넥스, 신풍제지(주), 새한미디어(주), 한솔제지(주)(2), 삼양사 전주공장(2), 한화종합화학(주), 제일합섬, 선경인더스트리(울산공장), 대구염색공단, 에너지관리공단 집단에너지사업본부
후지	11	232,400	동양화학공업(주) 인천공장, LG화학(카본), 포항종합제철(포항제철소)(4), 울산석유화학지원(주)(울산석유화학공단)(4), 고려에너지(온산공단)
신일본	15	101,385	이건산업(주)(2), 제일제당 인천1공장(2), 대성목재(주), 선창산업(주), 한라시멘트(명주), 애경유화(3), 쌍용정유, (주)효성T&C, 삼성BP화학, 고려아연
미쓰비시	16	179,230	(주)선경인더스트리(수원)(3), 태광산업, 대화합섬(2), 유공(6), (주)선경인더스트리(울산공장), 태창기업(주), 삼성종합화학(대산공단), 두산건설(이천공업지역)
바셀라	2		삼성코닝(주)(2)
카타필라(미)	3	7,660	중앙개발
AEG	4	52,330	현대석유화학(주), (주)포스코캠(2), 동해필프(주)
ABB	8	351,205	한솔제지(주), 동해필프(주), 고려아연, 울산석유화학지원(주)(2), 반월열병합발전소(반월공단), 구미열병합발전소(구미공단), 에너지관리공단(대전 3·4공단)
GE	4	133,900	LG칼텍스정유(주), 한화종합화학(주), LG석유화학(주), 대림산업(여천공단)
한국중공업	2	75,040	LG칼텍스정유(2)
알스롬(불)	5	199,350	호남석유화학(주), LG화학 여천화치공장, 포항종합제철(포항제철소), 삼성종합화학(대산공단), 신호상사(오산공업지역)
COOPER	1	16,850	대림산업(2공장)
MHI	8	800,000	포항종합제철(광양제철소)(8)
EM	2	17,274	남해화학(주)
토시바	4	300,000	포항종합제철(포항제철소)(4)
BBC	1	4,500	(주)포스코캠
ASE	1	15,540	(주)한일합섬
SKINNER	4	13,950	(주)무학주정, 풍국주정공업, 진로발효(주), (주)한일합섬
ALLENS	1	4,500	삼양사 울산공장
터보테니카	1	23,715	유공
히타치	1	6,000	(주)코오롱 구미공장
MAN	2	11,200	삼남석유화학(주)
MURRAY	2	8,450	조양화학, 반월열병합발전소(반월공단)
영국	3	9,000	쌍방울(무주리조트)(3)
AE&E	1	19,000	부산염색공업협동조합(부산염색공단)
기타	4	33,600	기타

## 참고자료 3. (사)한국열병합발전협회 '97 사업 및 수지예산 집행실적

### 1. 사업총괄

제 목	계 획	실 적	제 목	계 획	실 적
1.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 전기사업법 관련사항 ○ 대기환경보존법 관련사항 ○ 환경영향평가법 관련사항 ○ 자원절약과 재활용법 관련사항	1회	8건 (3건)	6. 협회지 발간	4회	3회
		(3건)	7. 기술정보 발간	-	7종
		(1건)	8. 국내 열병합발전 관련기관 협조체제 유지	-	2개기관
2. 열병합발전 기술세미나 및 교육 ○ 열병합발전 기술세미나 ○ 열병합발전설비 유지·보수교육	6일 (2일)	6일 (2일)	9. 회원 가입 독려	1회	2회
	(4일)	(4일)	10. 석탄재 재활용 추진	1회	1회
3. 국내외 기술정보 수집·보급 ○ 국외 문헌정보 수집·보급 ○ 국내 문헌정보 수집·보급	수시	54건 (40건)	11. 홍보사업(신문기사)	수시	4회
		(14건)	12. 행정사항 ○ 정기총회 및 이사회 ○ 정관계정	2회 (1회) (1회)	2회 (1회) (1회)
4. 해외연수 및 국제협력 ○ 해외연수 ○ 국제협력	1회 (1회)	1회 (1회)	합 계		
	수시	(5개국)			
5. 지역별 순회 간담회	2회	2회	19개 세부사업, 90건		

### II. 세부사업 추진실적

#### 1.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추진

가. 협회에서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에 관한 자료를 계속하여 수집·분석·건의하고 있으며 협회에서 건의하고 노력하여 1997년도에 개선 및 완화된 내용은 8건이었다.

##### 나.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실적과 기대효과

○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에 의한 기대효과

##### ① 전기사업법 관련사항

- 한전으로부터 수전전력에 대한 기본요금의 경감
- 발전기 및 터빈(증기) 검사 연기를 2년 전2개월 후 2개월에서 전은 언제라도 가능하고 후는 5개월로 연장되어 생산성 향상에 기여
- 기계기사 2급의 안전관리 범위확대로 인건비 감소

##### ② 대기환경보존법 관련사항

- 고체 및 액체연료에 대한 기본부과금 부과 면제기준을 0.3%에서 0.45%(고체연료), 0.5%(액

체연료)로 각각 완화하므로 전회원사가 기본부과금 면제 또는 경감 혜택을 받게 되었음.

- 수도권 및 일부지역에 1997. 7. 1일부터 황합유량 0.5%의 B-A유를 사용하게 되어있던 것을 B-A유, B-C유 중 사용업체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되어 B-A유와 B-C유의 가격차이만큼 연료비용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음.

- 대구 및 울산지역의 고체연료 사용을 청정연료 사용으로 전환을 요구한 민원에 대하여 기존허가된 시설은 허가시 사용연료를 계속 사용하게 하므로써 투자비 경감.

##### ③ 환경영향평가법 관련사항

- 1만 KW이상 발전설비의 신규설치나 증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3만 KW이상으로 상향조정하므로써 신증설시의 편의제공 및 비용 절감.

##### ④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 관련사항

- 석탄재 재활용 범위를 확대하므로써 석탄재 처리비용을 경감.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실적

관련 법규	개선전 내용	협회의 개선 건의(안)	개선 내용(근거)
전기사업법 제 17 조	한전 수전기본요금을 직전 12개월중 최대 전력 기준 부과	직전 3개월중 최대전력 기준부과	하계(7, 8, 9월)와 당월을 비교하여 높은 것을 기준부과(개정: 97. 7. 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46조	발전기·터빈(증기) 검사주기: 2년 2월전후	발전기·터빈(증기) 검사주기: 3년 동일 연도내	발전기·터빈(증기) 검사주기: 2년 2월전 5월후(개정: 97. 9. 2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57조	2급 기계기사 안전관리범위 60Kg/Cm <sup>2</sup> 이하	2급 기계기사 안전 관리범위 100kg/cm <sup>2</sup> 이하	좌 동 (개정:97. 9.2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조	환경영향 평가대상 발전설비:1만KW 이상	환경영향 평가대상 10만kW 이상	환경영향 평가대상 3만kW 이상(개정: 97. 9.8)
자원절약과 재활용법 12조	석탄재 재활범위: 레미콘 혼화재, 시멘트원료, 경량골재, 벽돌	현행에 추가건의 성토용·복토용·도로용 골재외 3종	좌 동 (개정: 97. 7. 14)
대기환경보존법 시행령 26조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0.3% 미만의 고체 및 액체연료(한전 수준)기본부과금 면제	100MW 미만 발전설비의 경우 고체연료0.45%미만, 액체연료 0.5%미만시 부과금 면제	좌 동 (개정: 97. 12. 31) ※시행: 98. 1. 1
대기환경보존법 26조 관련 환경부 고시 1997-37호	97. 7. 1일부터 황함유 0.5%미만 B-A유 사용(수도권,대구,인천,울산,여천등)	유종에는 관계없이 0.5% 미만의 액체연료사용	유종중 B-A,B-B,B-C 구분없이 황함유량 0.5% 미만사용(개정:97. 4.24)
"	고체연료 사용을 청정연료로 전환요구 민원(대구,울산)	기허가된 시설에서의 고체연료 사용은 기기수명 소진시까지 현행유지	좌 동 (상 동)

2. '97 열병합발전 기술세미나

- 일시: 1997. 9. 4~5(2일간)
- 장소: 에너지관리공단 집단에너지사업본부 강당
- 참가인원: 105명
- 세미나 주제 및 발표자
- 우리나라의 전력요금제도(통산부, 도경환 사무관)
- 열병합발전 타당성 조사방법(LG Eng, 황정두 차장)
- 열병합발전 고장사례·원인과 대책(한전기공, 윤기남 부장)
- 소형 열병합발전 도입현황과 기기개발(한국가스공사, 방효선 박사)
- 자동제어기술(LG 하니웰)
- 독일의 열병합발전 운전사례(MAN 기술자)

- 장소: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 에너지관
- 참가 인원: 36명(회원사 요원만 참가 가능)
- 교육과목 및 강사
- 보일러설비 보수기술(한전전력연구원, 한영태 과장)
- 터빈설비 비파괴 진단기술(한전전력연구원, 유근봉 과장)
- 보일러 터빈 정비기술(한전기공, 김종오·김성봉 과장)
- 회전체 및 고정체 진동특성(한전전력연구원, 조철환 과장)
- 재료별 손상해석 특성(한전전력연구원, 이성호 과장)
- 설비 성능진단방법 및 효과(한전전력연구원, 김경철 과장)
- 자동제어 신기술(한전전력연구원, 김은기 부장)

3. 열병합발전 유지·보수 교육

- 일시: 1997. 5. 7 ~ 10 (4일간)

- 발전설비 효율적 운전방안(한전 보령화력발전소, 권영국 과장)
- 한전 보령화력발전소 견학

#### 4. 국내외 기술정보 수집 및 보급(문헌정보화 보급)

- 국외 기술 및 관련 정보 : 40건
- 국내 기술 및 관련 정보 : 14건

#### 5. 열병합발전 해외연수 및 국제협력

- 열병합발전 해외연수
  - 기간 : 1997. 10. 17 ~ 26 (9박 10일)
  - 참가자 : 11명
  - 방문국 : 독일, 네델란드, 프랑스, 일본
  - 연수결과 : 견학 및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열병합발전 해외정보로 회원사에 발간, 배포
- 국제협력
  - 대상기관 : 네델란드 열병합발전협회(암스텔담)  
국제 열병합발전연맹(브뤼셀)  
프랑스전력공사 국제협력부(파리)  
독일발전소 운전자기술협회(엡센)  
일본열병합발전센터(동경)
  - 추진내용 : 상호 열병합발전 관련정보 교환 합의

#### 6. 지역별 간담회 개최

- 목적 : 열병합발전소 운용실무요원간 상호인사 및 유대강화, 기술정보교환 도모
- 일시 및 장소
  - 울산지역 : 1997. 7. 22 ((주)유공 회의실 : 21명 참가)
  - 여천지역 : 1997. 7. 24 (한화중합화학 영빈관 : 20명 참가)
- 회의 성과 : 동일분야근무 기술요원간 인사 및 자기소개등을 통한 상호 유대강화에 기여

#### 7. 협회지 “열병합발전” 발간

- 계간지로 협회지를 발간하였으며 기술자료, 통계자료, 업체자료, 회원사의 동정, 관련법규의 개정추진 및 현황 등을 수록하여 정기적으로 발간, 배포하였음.

- 주요내용 목록

<협회지 3호 : 봄호>

- (사)한국열병합발전협회 제6차 정기총회
- 열병합발전이 에너지절약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에너지절약정책과 집단에너지 사업추진방향
- 전력설비 안전관리와 검사
- 발전설비의 성능시험 및 계산
- 열병합발전용 증기터빈의 최근변동추이
- 발전기 자동전압조정 설비의 이해와 관리
- 가스터빈의 배열이용 형태(일본사례)
- 열병합발전 시설보유 · 운영업체 에너지사용현황
- 1997년도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 금융세제 지원안내

<협회지 4호 : 여름호>

- 열병합발전설비 유지 · 보수교육 실시
- 소형 열병합발전 설치 및 기술개발 동향
- 토중급속 방식진단
- 초음파를 이용한 배관부식 측정기술
- 배관파손 원인과 검사방법
- 보일러 급수펌프의 형식별 특징
- 복합화력 발전시스템과 에너지이용 효율
- 열병합발전운영과 에너지 절약사례
- 규제완화 관련동향
-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완화 건의내용
- 전국 열병합발전업체별 에너지사용및 설비현황

<협회지 5호 : 가을호>

- '97 열병합발전 기술세미나
- 열병합발전소의 에너지절약
- 배연 탈황기술
- 디젤엔진을 사용한 열병합발전 시스템에서의 열회수장치
- 기업규제 완화 내용
- 열병합발전소 근무자를 위한 교육비디오 테이프 목록

#### 8. 기술정보 자료수집 및 발간 배포

- 열병합 발전설비 보수관련 정보 : 연 1회 발간
  - 열병합 발전업체 · O/H 현황 및 관련업체
- 보일러 · 터빈 · 발전기의 검사기준집 : 변동시 (해당기관 협조)
- 기술세미나 강의록 : 연 1회 (300p)
- 정비 보수교육 강의록 : 연 1회 (350p)

- 발전 설비 시공업체 현황 : 연 1회
- 열병합발전 해외정보 : 연 1회
- 전국열병합발전업체 및 시설현황 : 연 1회
- 관련법규의 변동사항 : 수시

획을 조사하여 상호 재활용 내용에 대한 정보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III. 1997년도 수지예산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과 목		예 산	과 목		예 산
관	항		관	항	
회비수입		72,398	자산	고정자산	137
	회비수입	72,398	경상비		54,421
				급 여	39,106
				복리후생비	4,781
				관 리 비	10,534
잡수입	잡수입	28,452	사업비		44,019
미수금	전년도미수금			사업비	44,019
전년도이월액	전년도이월액	38,607	차기년도이월	차기년도이월	40,880
합	계	139,457	합	계	139,457

#### 9. 열병합발전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

정부 및 민간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협회가 소형 열병합발전 사업단의 단원으로 열병합발전 보급에 노력하고 있음.

#### 10. 석탄재 재활용 추진

통상산업부 및 환경부 고시 제93-110호에 의하여 우리 협회와 한국전력공사가 석탄재 재활용에 관한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유연탄을 사용하는 7개 열병합발전소를 대상으로 재활용실적 및 계

## 참고자료 4. (사)한국열병합발전협회 '98 사업계획 및 예산

### 1. 사업목표

협회가 1991. 9.27일에 설립된 이래 5년이 경과하였다. 그동안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사업기반을 구축하여 왔으나 돌이켜 보면 아쉬운 점도 많았다. 1997년은 모든면에서 한단계 진전된 사업전개로 회원사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가. 회원사 권익확보 및 공동이익 추구

- 각종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으로 공동이익을 추구
- 관련기술정보의 제공으로 운전 및 정비비용 감소추진
- 유관기관 및 단체와 유대강화
- 회원사를 늘려 협회능력증대

#### 나. 교육조사사업

- 기술세미나, 교육 등 행사를 통한 신기술 보급 및 정보교류
-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회원사간 정보교류 활성화
- 열병합 관련자료의 수집 및 문헌정보화 보급

#### 다. 열병합발전도입 촉진사업

- 열병합발전 관련법규 해설서 발간
- 신기술 도입을 위한 해외신기술 및 비용정보 수집보급
- 최적설계 관련정보 보급

#### 라. 간행물 발간사업

- 협회지 발간에 의한 기술 및 관련정보 적기전파
- 기타기술 및 통계정보 간행물 수시발간으로 정보교류 활성화 도모



## 2. 세부사업 추진계획(요약)

주요 사업	세 부 사 업	사 업 기 간				주요 사업	세 부 사 업	사 업 기 간			
		1/4	2/4	3/4	4/4			1/4	2/4	3/4	4/4
1. 제도개선 조사연구 및 개선건의	○ 자료조사 대상: 전기사업법 관련사항 에너지요금 관련사항 대기환경보존법 관련사항 ○ 자료분석정리 및 개선방안건의						- 대상인원: 10~15명 - 비 용: 참가자 부담 ○ 외국관련기관과의 협력증대 - 국제열병합발전연맹 - 네델란드 열병합발전협회 - 일본 열병합발전센터 - 프랑스 EDF 및 COGETHERM 등				
2. 열병합발전 기술세미나 및 교육	○ 열병합발전 기술세미나(1일) - 환경대책기술 - 운전·보수 기술 - 최적설계 및 시스템운영 ○ 열병합발전 실무요원교육(4일)					7. 열병합발전 관련법규 해설서 발간 ○ 관련법규조사 및 해설서 발간 ○ 대상: 전기사업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환경관계법, 건 축법, 소방법, 노동안전 보건법, 열공급사업법, 고 압가스안전법등 ○ 자료 조사 ○ 인쇄 및 발간					
3. 조사연구 및 보급	○ 국내 관련 문헌수집 ○ 국외 기술정보수집 ○ 정보자료의 문헌정보화 보급 ○ 간담회 개최										
4. 홍보사업	○ 협회지 "열병합발전" 발간(4회) ○ 주요내용 - 기술정보 및 사례 - 관련통계자료 - 문헌정보 및 관련법규개정 - 회원사 공동관심 내용					8. 순회 간담회 ○ 현지방문 순회 간담회 - 회원사 요구사항 자료수집 및 반영 9. 회원가입 독려 ○ 회원가입안내 ○ 협회 브르셔 제작 및 배포					
5. 정보교류사업	○ 운전·보수·고장사례 수집 ○ 사례별평가 및 문헌정보화 ○ 정보보급시스템 구축 및 보급					10. 행정 관리 ○ 총회 및 이사회 개최 정관 및 관련규정 개정 11. 자문위원 운용 ○ 자문위원 운용 (4회)					
6. 국제협력사업	○ 해외 자료조사 및 시찰단 파견 - 대상지역: 일본, 미국 - 기 간: 7월					합 계				11중 18개 세부사업	

## 3. 수지예산총괄

'98

(단위: 천원)

수 입			지 출		
과 목		예 산	과 목		예 산
관	항		관	항	
회비수입		86,500	자 산	고 정 자 산	3,000
	입회가입비	3,000	경 상 비		64,534
	회비수입	83,500		급 여	41,814
				복리후생비	5,520
				관 리 비	17,200
잡수입	잡수입	2,134	사 업 비		32,800
미수금	전년도미수금	3,900		사 업 비	32,800
전년도이월액	전년도이월액	40,880	예 비 비	예 비 비	24,815
			충 당 금	퇴직충당금	8,256
합	계	133,414	합	계	133,414